

이천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문화예술과

제정 1996· 3· 1 규칙 제 16호
개정 1998· 10· 19 규칙 제136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개정 2001· 12· 6 규칙 제234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개정 2007· 7· 2 규칙 제357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3· 8· 7 규칙 제483호
일부개정 2014· 9· 12 규칙 제520호
(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 2019· 7· 1 규칙 제653호
일부개정 2021· 6· 25 규칙 제70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문화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· 8· 7>

제2조(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) 「이천시 문화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· 8· 7>

1. 추천서(별지 제1호서식) 1통
2. 공적조서(별지 제2호서식) 1통
3. 이력서 1통
4. 삭제 <2014· 9· 12>
5. 공적증빙서류(공적자료 포함) 1부
6. 재직증명서(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) 1통
7. 현지조사 확인서(별지 제4호서식) 1부
8. 사진(상반신 명함판) 2매

제3조 삭제 <2021· 6· 25>

제4조 삭제 <2013· 8· 7>

제5조 삭제 <2013· 8· 7>

제6조(심사기준)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·8·7, 2021·6·25>

1. 문화부문 : 문화적 활동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거나 고유 의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의 보존, 전승, 발전에 공헌
2. 예술부문 : 문학, 공연, 음악, 미술, 사진, 연예부문 등 예술전반에 대하여 공헌하거나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창작품의 발표와 그 밖의 예술부문 발전에 공헌
3. 삭제 <2021·6·25>
4. 삭제 <2021·6·25>
5. 체육부문 : 우수선수 지도양성, 체육인구의 보급,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
6. 삭제 <2021·6·25>

제7조(심사내용의 공표금지) 시장은 수상자 선정의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 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·8·7>

제8조(수상자에 대한 대우)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를 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. <개정 2013·8·7>

제9조 삭제 <2013·8·7>

제10조(기록보존)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, 공적내용,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·8·7>

제11조(시상)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3·8·7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·10·19 규칙 제136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1·12·6 규칙 제234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7·7·2 규칙 제357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내지 ④생략

⑤ 「이천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문화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3·8·7 규칙 제48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9·12 규칙 제520호,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
관한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7·1 규칙 제65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·6·25 규칙 제70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9·7·1>

수 상 후 보 자 공 적 조 서			
종 별 :		부 문	
등록기준지	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수상후보 요건자만 기재		
주 소			
성 명		생 년 월 일	
현 직		종 사 기 간	
학 력 및 경 력 사 항			
년 월 일	학 력	년 월 일	경 력
상 별			

공 적 사 항		
기간	활동 및 공적내용	비고
		○ 비고란에 증빙자료 관계를 표시할 것 (국한문 혼용)
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함.		
년 월 일		
작 성 자 (인)		
위 사실을 인정 확인함.		
년 월 일		
추 천 자 (인)		

※ 본 양식이 부족할 시 동 서식에 준한 별지 작성도 가함.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9·7·1>

문 화 상 수 상 자 대 장

번호	시상일자	시상부문	수 상 자			공적개요	비고
			성명(한자)	등록기준지	생년월일		

※ 등록기준지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사람만 기재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4·9·12>

현 지 조 사 확 인 서

1. 후보자 인적사항

- 주 소(소속) :
- 직 업(직위, 직급) :
- 성 명 :
- 생년월일 :

2. 현지조사 확인내용

- 품성
- 지역여론(공사생활 등)
- 공적사항(공적내용과 일치여부)

년 월 일

현 지 확 인 자 (인)

이 천 시 장 귀하

* 현지 확인자는 추천자와 일치